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
신청인	회사명(성명)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
	주소		
	대표자명	전화번호	전자우편
신규 기술·서비스	명칭		
	유형	[] 기술인 경우 [] 서비스인 경우 []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	
	주요내용		
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사유	1.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·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(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) []		
	2.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(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) []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합니다.

이
이
이

신청인 설명

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-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계획서(실증계획서) 1부 -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-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의 사업범위·추진방법·추진일정 -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에 대한 실증과 관련한 신청자의 재정적·기술적 능력 -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·기간 및 관련 법령 -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가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-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 1부 -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
-------------	---

처리 절차

